

거창군수승대국민관광지관람료및시설이용료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01 ~ 21
----------	-----------

제출연월일 : 2001. 6. 9.

제 출 자 : 거 창 군 수

□ 개정이유

- 관광진흥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개별 법령에서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등에게 관람료 등의 면제조항 및 경승용차 주차료의 경감조항 등을 명시하고,
-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야영료 징수기준 등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

□ 주요골자

- 거창군수승대국민관광지관람료및시설이용료징수조례
⇒ 거창군수승대관광지관람료및시설이용료징수조례(제명개정)
- 관광진흥법 관련조항 정비(안 제1조)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의 관람료 등 면제(안 제8조제1항)
- 경승용차(배기량 800cc이하)의 주차료 경감(안 제8조제3항)
- 시설이용료(야영료) 징수기준 조정(별표2)

□ 개정근거

- 관광진흥법 제64조
- 장애인 복지법 제27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67조

거창군수승대국민관광지관람료및시설이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거창군수승대국민관광지관람료및시설이용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창군수승대국민관광지관람료및시설이용료징수조례”를 “거창군수승대관광지관람료및시설이용료징수조례”로 한다.

제1조중 “수승대국민관광지”를 “수승대관광지”로하고, “관광진흥법 제35조”를 “관광진흥법 제64조”로 한다.

제8조 제1항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제6호 및 동조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국가기관에서 요양중인 상이군경, 장애인 복지법의 관련규정에 의한 장애인수첩 소지자,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증 소지자.

③ 군수는 경승용차(배기량 800cc이하)에 대하여는 시설이용료인 주차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별지1] 관람권, [별지2] 주차권, [별지3] 야영장이용권, [별지4] 썰매장이용권, [별지5] 유선장이용권중 “수승대국민관광지”를 “수승대관광지”로 한다.

[별표2] 가. 시설이용요금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5] 유선장 이용권 “규격 120mm×60mm(모조100 g / m²)”를 “규격 180mm×60mm(모조100 g / m²)”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조례의 개정) 거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4조제3항 및 제16조제1항3호와 별표2중의 “수승대국민관광지”를 “수승대관광지”로 한다.

[별표2]

가. 시설이용요금표

(단위 : 원)

구 분		당 일	체 류(숙박)
주 차 료	이 룰 차	400	800
	승 용 차	2,000	4,000
	버 스	4,000	8,000
	화 물 차	4,000	8,000
야 영 장 이 용 료	일반텐트 (소형천막)	2,000	1일추가시 2,000
	차양시설	5,000	1일추가시 5,000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u>제명 거창군수승대국민관광지관람료및 시설이용료 징수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승대국민관광지”(이하‘관광지’라한다.)의 보호관리와 <u>관광진흥법 제35조의 규정에</u> 의하여 관광지의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이하‘관람료등’이라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8조(관람료등의 면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료등을 징수하지 않는다.</p> <p style="margin-left: 20px;">1. ~ 5. (생략)</p> <p style="margin-left: 20px;">6. <신 설></p> <p style="margin-left: 20px;"><u>6. 기타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u></p> <p style="margin-left: 20px;">② (생략)</p> <p style="margin-left: 20px;">③ <신 설></p>	<p><u>제명 거창군수승대관광지관람료및시설 이용료징수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승대관광지” ----- “<u>관광진흥법 제64조</u>”의 규정에 ----- ----- ----- -----.</p> <p>제8조(관람료등의 면제) ①(현행과 같음)</p> <p style="margin-left: 20px;">1. ~ 5. (현행과 같음.)</p> <p style="margin-left: 20px;">6. <u>국가기관에서 요양중인 상이군경, 장애인 복지법의 관련규정에 의한 장애인수첩 소지자,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 유공자증 소지자.</u></p> <p style="margin-left: 20px;">7. (현행 6호와 같음).</p> <p style="margin-left: 20px;">② (현행과 같음)</p> <p style="margin-left: 20px;">③ <u>군수는 경승용차(배기량 800cc이하)에 대하여는 시설이용료인 주차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u></p>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2] 가. 시설이용요금 (단위 : 원)				[별표2] 가. 시설이용요금 (단위 : 원)			
구 분		당 일	체류(숙박)	구 분		당 일	체류(숙박)
주 차 료	이륜차	400	800	주 차 료	현행과 같음		
	승용차	2,000	4,000				
	버 스	4,000	8,000				
	화물차	4,000	8,000				
야 영 장 이 용 료	<u>소형천막 (5인이하)</u>	<u>2,000</u>	<u>1일추가시 2,000</u>	야 영 장 이 용 료	<u>일반텐트 (소형천막)</u>	2,000	<u>1일추가시 2,000</u>
	<u>대형천막 (6인이상)</u>	<u>4,000</u>	<u>1일추가시 4,000</u>		<u>차양시설</u>	<u>5,000</u>	<u>1일추가시 5,000</u>